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79
----------	-------

발의연월일 : 2026. 5. 4.

발 의 자 : 이인영 · 이훈기 · 민병덕
김용만 · 강준현 · 이강일
박상혁 · 이기현 · 소병훈
이정문 · 복기왕 · 김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거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조정이 거부되는 등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된 경우까지 시효 중단 혜택이 배제되고, 소 제기 유예기간 역시 1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금융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분쟁조정 신청인 및 관계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해야 하는 기한이 20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내부 의사결정이나 법률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한 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실정임.

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결로 인해 조정이 거부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그 외에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시효중단 효력 유지를 위한 소 제기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안 수락 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7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3호) 중 “제1호나 제2호에”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4.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다만, 신청인 또는 관계 당사자에게 20일 이내에 수락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1회에 한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단서 중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개월”을 “6개월”로 한다.

1. 신청이 취하된 경우

2. 제3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7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생 략)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 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 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 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u> <u>소가 제기된 경우</u>
<u><신 설></u>	<u>4.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u> <u>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u> <u>아니한 경우</u>
<u><신 설></u>	<u>5.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u> <u>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u>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 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u>6. -----제1호부터 제5호까</u> <u>지에-----</u> -----

③ ~ ⑥ (생략)

⑦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 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제40조(시효의 중단)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③ ~ ⑥ (현행과 같음)

(7) -----

-----. 다만, 신청인 또는 관계 당사자에게 20일 이내에 수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1회에 한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시효의 중단)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신청이 취하된 경우

2. 제3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여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
에 회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 ----- ----- ----- -----. ③ (현행과 같음)
--	---